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중심으로 -

Modified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Specialized in Income Withholding

전 혜 정*
Jeon, Hye-Jung

목 차

- I. 서론
- II. 개정 전 양육비 지급실태 및 관련 문제점
- III. 미국의 급여공제제도
- IV.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검토
- V. 남아있는 문제점(결론에 갈음하여)

국문초록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종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는 일반 민사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그 실효성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와 입법활동에 힘입어 2009년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장래 채권인 양육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정기금채권인 양육비채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글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입법과정과 그 요건 및 절

논문접수일 : 2010.12.30

심사완료일 : 2011.1.24

게재확정일 : 2011.1.25

* 법학박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관.

차, 그리고 직접지급명령제도가 가장 보편적인 양육비 확보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급여공제제도에 대한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주제어 : 이행확보, 양육비, 부양,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1. 서론

근래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저소득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마련되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비혼모의 예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이며, 이혼율의 증가는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 한 연구에서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였다.¹⁾ 따라서 적절한 양육비가 계속적으로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양육비가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의 총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기금채권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과 양육비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부모의 별거나 이혼으로서 양육비권리자와 의무자 간에 감정적인 부분이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결정되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육비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육비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며²⁾, 이들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적인

- 1) 387명의 응답자중 207명(53.5%)이 자녀양육비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2006, 112~113면).
- 2) 김유미,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법학』, 제2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1999. 6; 김상용,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4.6.29;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9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 박복순,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안 검토」, 『가족법연구』, 제20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6; 차선자, 「적정양육비 산

결실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9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로 처음 도입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종래 양육비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강제집행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양육비채무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제도 (Income Withholding)는 미국에서 이미 양육비확보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주요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개정 전 양육비 지급실태 및 관련 문제점

1. 양육비 지급실태

2007년 개정 민법에 의해 2008년 6월 21일 이후에 협의이혼하는 부부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나, 그 이전의 협의이혼의 경우는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필수협의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실제 이혼하는 부부가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하는지 여부 및 그 양육비의 금액 등 양육비 지급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사회단체 등에 의한 설문조사나 표본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며, 2001년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³⁾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38.5%에 불과했고, 이 중 합의나 판결대로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는 비율은 38.7%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해 여성민우회와 성 상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혼이나 별거 시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한 경우는 29.9%였고,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이 중 42.8%에 그쳤다. 또한 2006년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으나(76.0%), 실제 조사대상자 중 이혼 후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12.7%에 불과하였다.⁴⁾

정 기준을 위한 제안”, 「가족법연구」, 제20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6.

3) 김상용, 전계논문, 33면.

4) 조사대상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387명으로 이 중 남성은 67명, 여성은 320명임(여성가족부 2006. 12. 13. 보도자료).

2. 종래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가.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

가사사건은 이해관계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재판이나 조정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그 전에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실질적·종국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가사재판에 집행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성격상 강제집행과 친하지 아니하거나 절차의 번잡과 비용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가사사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방법 이외에 가사재판의 실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이행확보제도이다.⁵⁾

이행확보제도는 사전적 이행확보와 사후적 이행확보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재판의 확정이나 조정의 성립 전에 미리 그 내용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사전처분(제62조), 가압류·가처분(제63조)이 이에 속하고, 후자는 재판이 성립되거나 확정된 후에 그 내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행명령(제64조), 금전의 임치(제65조) 등이 있다.⁶⁾

사전처분⁷⁾은 양육비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되기 전의 양육비청구사건⁸⁾에 있어서도 상대방(양육비의무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⁹⁾ 그러나 이러한 사전처분

5) 박동섭, 「주석 가사소송법」, 박영사, 2004, 663면.

6) 신중철, “가사사건에 관한 집행과 이행의 확보 및 벌칙”, 「사법행정」, 430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10, 54면.

7)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양육비와 관련한 사안으로 제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하 가압류·가처분, 이행명령, 금전의 임치도 마찬가지이다.

8)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3, 8호 사건.

9) 일단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구 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1991. 1. 1.부터 폐지된 법률) 제37조가 규정하는 선고 전 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 해당)의 방법에 의하여 임시로 종전의 협정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양육을 적법하게 하고 피청구인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분담시키는 처분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체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1.21.

에 집행력은 없으므로 양육비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라는 간접적인 제재 외에는 강제방법이 없다.

또한 양육비청구와 같은 마류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가처분도 가능하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양자는 같은 성질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이나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와 동시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나 감치와 같은 제재가 따른다는 경고의 절차이기도 하다. 이행명령제도는 민사집행상의 강제집행방법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양육비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먼저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명령도 과태료 외의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집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가사채무는 일반 민사채무에 비하여 그 이행의 필요성이 긴급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구제방법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이행확보제도도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었다.¹⁰⁾

그 이유는 이행확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이혼 등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한 경우로 한정되고 이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 양육비지급이 결정된 경우 외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행확보제도에 대한 인식부족도 그 한 요인이다.¹¹⁾ 어쨌든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나 강제력의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수 있다.

나.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제도

가정법원의 이행확보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채무와 동일하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종래부터 양육비와 같이 소액정기금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채무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강제집

선고 91므689 판결).

10) 감치의 예는 이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1건도 없었으며, 이행명령의 경우는 초반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278건, 2008도에는 474건의 이행명령신청사건이 접수되었다(사법연감).

11) 김연, "가사소송상 효율적인 이행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0권 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389면.

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되어 왔다. 즉 통상의 강제집행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청구채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양육비채권자는 매월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불이행되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매월 말의 불이행을 기다려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을 반복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절차가 번잡할 뿐만 아니라 정수한 양육비에 비해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분의 미지급 후에 어느 정도 축적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양육비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배당 등을 거쳐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압류가 경합되는 등으로 인하여 채권액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Ⅲ. 미국의 급여공제제도(Income Withholding Program)

양육비의 이행확보제도는 각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급여공제제도이다.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서 급여공제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아래에서는 미국 급여공제제도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도입배경 및 발전

양육비 이행강제제도(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¹²⁾의 하나로서 급여공제가 도입된 것은 1984년법(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mendment of 1984, Public Law 98-378)이지만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는 1975년의 사회보장법 IV장 D절(Title IV-D of Social Security Act, 이하 IV-D)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IV-D는 연방 양육비 이행강제국(Federal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의 지원 아래 양육비 확보와

12) 이를 양육비징수프로그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국가가 각종 제도를 통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번역하기로 한다.

강제이행을 위한 연방-주시스템을 창설하였다. 구체적으로 IV-D는 각 주(州)로 하여금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성(父性)을 확정하고, 양육비채무를 확보할 수 있는 법률 및 절차를 활용한 양육비 이행강제 프로그램을 확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양육비명령을 받지 못한 가족 중 40%의 가족들에게 양육비지급명령이 내려지는 등 양육비 징수에 개선이 있었지만, 통계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양육비지급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의회는 프로그램의 기본전제를 재고하여 사회보장법 IV-D 시행 10년만인 1984년에 양육비 이행강제에 관한 수정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수정법은 원래 법률에 강제징수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종래의 법은 IV-D프로그램 하에서 실체법과 절차를 통하여 양육비 이행강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법은 각 주(州)의 가족법을 개정하여 이행강제 조치를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결정은 가장 효율적인 이행강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사이의 징수 성공률의 현격한 차이에 어느 정도 기초한다. 이 강제절차의 핵심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양육비지급명령을 게을리한 채무자의 급여 등 다른 수입으로부터 양육비를 공제하는 시스템 즉 급여공제제도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¹³⁾

이와 같이 1984년법에 도입된 양육비 급여공제제도는 그 공제의 개시를 위해서는 1개월의 양육비 체납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1988년의 가족부양법(Family Support Act of 1988)에 의해 체납 조건이 없어져 양육비는 모두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공제(immediate withholding)되게 되었다.¹⁴⁾ 그 후 1996년의 개인책임 및 취업기회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PRWORA) of 1996)의 제정으로 각 주는 양육비의 수령과 분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State

13) Th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aryland), *Mandatory Income Withholding Implementation Monograph*, 1985. 12, pp.1~2.

14) 이와 같은 자동급여공제제도의 이행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나뉘었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체납하지 않는 자에게도 급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료제도, 재정지출의 낭비, 정부개입에 의한 지급의 지연, 부와 자녀와의 교류의 저해, 양육비의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父)의 불만, 기업과 비양육친과의 관계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 반대로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체납을 조건으로 할 경우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1개월 체납 후에 절차를 개시하여도, 공제개시까지는 3-4개월을 요하는 실정이나, 체납동안에 부(父)가 소재불명이 될 위험성이 지적되어 있다. 또한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한 급여공제제도는 징벌적이며, 오히려 모든 사례에 적용하는 면이 공평하며, 스티그마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주장되었다(Corbett, T., I. Garfinkel and N.C.Schaeffer, "Public Opinion about a Child Support Assurance System", *Social Service Review*, Vol. 62, 1988.12, pp.632~648).

Distribution Unit, SDU)을 설치하게 되었다.¹⁵⁾ 이에 의해 급여공제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것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양육비가 이 기관에서 지급되며, 여기에서 가족이나 연방정부·주정부로 배분된다. 이렇게 하여 양육비의 지급처를 주(州)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지급상황의 파악도 쉽게 되고, 체납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양육비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와 같이 행정기관이 징수·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내 용

가. 성격

미국에서의 양육비 급여공제는 양육친으로부터 주(州)에게 양육비청구권이 양도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급여공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과를 갖는 양육비명령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양육비명령은 부모가 자녀양육비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의 법원시스템에 의하면 양육비명령을 취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양육비명령을 취득하기 위하여 통상의 사법시스템보다도 간단한 「행정적 시스템」 또는 「준사법시스템」으로 불리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법정에서의 법원에 의한 프로세스를 요하지 않고, 행정적인 프로세스에서 양육비명령이 발부된다.

나. 절차

먼저 주(州)사무소에서는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상태, 사용자 위치, 지급장소, 지급주기를 확인한다. 대규모 사용자는 종종 여러 곳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급여공제명령을 어느 곳으로 보내야 할지를 분명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州)는 양육비채무자로 하여금 그 조치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공제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급여공제가 개시된 사실, 지연된 양육비 및 앞으로 급여 중 공제될 금액, 공제 규정은 현재 또는 이후의 사용자, 고용기간에 적용된다는 점, 공제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절차와 다룰 수 있는 경우는 공제가 사실의 착오에 의한 것일 때뿐이라는 점, 공제 관련 사항이 사용자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포함하여야 한다.¹⁶⁾

15) 자세한 내용은 Vicki Turetsky, "Child Support Administrative Processes: A Summary of Requirements in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1997.1, pp.21~22 참조.

주(州)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그 통지를 다룰 수 있으며, 다투지 않을 경우 급여공제 조치는 계속된다. 공제사무소는 통지일자 및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만기일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사전통지가 있는 지 45일 이내에 주(州)는 급여공제명령을 다투는 비양육친에게 자기 사정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청취에 기초하여 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이 법원시스템에 있는 주의 경우 그 심리(hearing)는 통상 집행판결을 다투는 판결에서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심리와 유사하며, 그 범위는 사실의 착오에 한정된다. 행정기관이 그 절차를 집행하는 주는 행정적인 심리가 이루어진다. 심리하는 동안 채무자는 사실의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것이 유일하게 공제조치가 정지되는 논거이다. 사실의 착오는 연방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또는 지연 양육비의 착오나, 비양육친으로 간주되는 자의 동일성의 착오를 말한다.¹⁷⁾

만일 주가 Public Law 98-378의 이행에 관해 급여공제의 사전통지를 면제하고 있다면 주는 비양육친의 사용자에게 급여공제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비양육친에게 다툼의 결과가 통지되었거나 비양육친이 공제를 다룰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발송하는 통지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 연방 양식을 사용하여 발송하게 된다.¹⁸⁾

16) 45CFR Ch.Ⅲ(10-1-08 Edition) §303.100(d)(1)~(5).

17) 45CFR Ch.Ⅲ(10-1-08 Edition) §303.100(C)(2).

18) ① 비양육친의 급여로부터 공제될 금액과 양육비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이 CCPA가 허용하는 최고액을 넘지 않는 총액의 명세서, ② 사용자는 비양육친에게 지급되어야 할 날짜의 7일내에 총액을 SDU에게 보내야 하고, 또한 사용자는 비양육친의 급여에서 공제된 날짜를 SDU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 ③ 부양을 위한 공제총액에 덧붙여 주(州)가 수수료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면, 각 공제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위하여 주(州)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를 사용자가 공제할 수 있다는 점, ④ 공제는 주에 의해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용자를 구속한다는 점, ⑤ 사용자가 급여공제를 이유로 비양육친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 주법에 따라 정해진 벌금을 부과된다는 점, ⑥ 사용자가 통지규정에 따른 급여공제에 실패한 경우, 사용자는 비양육친의 그 금액만큼을 적립할 책임이 있다는 점, ⑦ 이 공제는 동일한 급여에 관하여 주법에 다른 어떤 법적 절차보다 우선한다는 점, ⑧ 사용자는 각 해당기관이 공제를 요청한 일시불(single payment)을 비양육친의 급여로부터 공제할 때 결합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비양육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일시불 비율을 독립하여 정할 수 있다는 점, ⑨ 사용자는 통지에서 정해진 금액을 비양육친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며, 비양육친에게 지급되어야 할 소득의 지급일로부터 7일내에 SDU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 ⑩ 사용자는 비양육친의 고용이 만료한 때에는 주에 즉시 알려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비양육친의 최종의 주소와 비양육친의 새로운 사용자의 그 이름과 주소를 알려야 하는 점이다(45CFR

다. 급여 공제액의 결정¹⁹⁾

급여공제의 대상이 되는 급여는 임금(wages), 봉급(salaries), 수수료(commission), 상여금(bonus), 근로자의 보상금, 장애보상금(disability), 연금이나 퇴직프로그램에 따른 지급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지급인을 불문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여하한 정기적인 지급형태를 말한다.²⁰⁾ 비양육친의 급여에서 얼마를 양육비로 공제할지는 두 가지 기본단계, 즉 가처분급여의 계산과 허용된 가처분급여의 계산을 통해서 결정된다.

(1) 가처분급여(disposal income)

가처분급여는 총급여에서 의무공제액을 제외한 급여의 총액이다. 의무공제액은 연방, 주, 지방세, 실업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주의 종업원퇴직공제, 기타 주법에 의해 정해진 다른 공제액이다. 가처분급여가 순급여(Net Income)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는 노동조합회비나 자동차대출금과 같이 의무적이지 않는 것을 그의 급여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2) 허용된 가처분급여(allowed disposal income)

허용된 가처분급여는 양육비공제가 가능한 최고액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제가 명령되는 금액은 허용된 가처분급여보다 적고, 또한 명령된 금액은 특별한 문제없이 공제할 수 있다. 비록 공제명령이 그보다 높은 금액의 지급을 정하고 있더라도, 허용된 가처분급여가 공제될 수 있는 최고액이다.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The 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CCPA))은 그의 현재의 가족상황과 양육비 지급이력에 기초하여, 근로자인 부모의 가처분급여의 공제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금액의 공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²¹⁾ 연방 CCPA에 의해 정해진 공제한계는 다음과 같다. 2차 가족(a second family)²²⁾을 부양하고 있고, 연체가 없거나 12주미만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50%, 2차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12주이상의 연체가 있는 경우는 55%, 싱글

Ch.Ⅲ(10-1-08 Edition) §303.100(e)(1)(i)~(x)).

19) 미국 보건복지부(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내 아동가정청(AC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홈페이지(http://www.acf.hhs.gov/programs/cse/newhire/employer/private/income_withholding.htm. 최종방문 2010. 12. 29.)

20) 42U.S.C. §666(b)(8).

21) 일부 주는 근로자인 부모의 소득을 더 많이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는 연방 한계를 따르고 있다.

22) 2차 가족이란 근로자가 부양해야 할 배우자나 자녀를 말한다. '연체'란 비양육친이 지급했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며, 연체가 없거나 12주미만의 연체가 있는 경우는 60%, 싱글이며, 12주이상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65%이다.

(3) 구체적인 예

이러한 방식으로 공제의 예를 들어 보면, 주급총액이 \$760이고, 주별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295이고, 의무공제액이 총 \$151이며, 근로자인 부모가 독신이고 양육비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가치분소득은 $\$760 - \$151 = \$609$ 이고, 허용된 가치분급여는 $\$609 \times 60\% = \365.40 이 된다. 한편 양육비는 \$295로서 이보다 작기 때문에 매주 \$295가 자녀양육비로서 공제된다.

라. 채무자 파산의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미지급된 양육비채무는 파산처분에 의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몇 번의 파산법 개정 후 2005. 10. 17.부터 시행된 파산법에서 양육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파산법하의 자동유예규정(automatic stay provisions)이 비양육친의 급여(income)나 임금(wage)에 대한 국내 부양채무(domestic support obligation)²³⁾의 공제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양육친의 양육비채무로 인한 급여공제의 목적을 위해 유예를 제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공제명령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채무자의 파산에 관한 통지 등을 받더라도 정당한 급여공제명령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파산법원의 수탁자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급여공제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음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행정기관이나 파산법원으로부터의 공식적인 통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급여공제를 할 의무가 있다.

마. 복수의 급여공제명령

1인의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의 급여공제명령이 있는 경우 CCPA에 따른 허용된 가치분급여(allowed disposal income)의 범위 내에서 현재의 부양을 위한 각 명령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州)는 각각의 명령에 따라 현재 부

23) 국내 부양채무(domestic support obligation)란 명백하게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혼수당(alimony)이나 생활비(maintenance)등 부양료의 성질을 갖는 채무나 금전을 말하며, 배우자, 전배우자, 자녀, 자녀의 부모, 자녀의 법정후견인(legal guardian), 자녀의 책임있는 친족이나 정부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양의무 이행을 위한 배분방식을 정하여야 한다.²⁴⁾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이 모든 양육명령에 분배되어야 하며, 지급명령의 도달 순서에 따라 먼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그 구체적인 배분방식에 관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각각의 현재 부양명령의 총액 비율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방식과 공제명령의 총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허용된 가처분급여를 균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3. 다른 주(州)사이의 공제

1984년 법률(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mendment of 1984)에서도 주사이의 급여공제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1998. 1. 1.부터 모든 주는 통일주간(州間)가족부양법(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을 채용하도록 하였고, 이 법률의 핵심 중 하나가 직접 급여공제(direct income withholding)이다. 이에 의해 급여공제명령은 채무자의 사용자가 속해 있는 주로 직접 보내지고, 사용자는 어느 주에 의해 내려진 급여공제명령이라도 사용자의 주(州)법원에 의해 내려진 명령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야 한다.²⁵⁾

따라서 다른 주의 IV-D기관이 직접공제를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통지에 따라 자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최대공제액, 공제수수료 등은 비양육친의 주된 직장 소재지의 급여공제법이 적용된다. 주사이의 급여공제는 비양육친이 고용되어 있는 주가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며, 급여공제가 양육비명령이 개시된 주에 의해 컨트롤되어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비양육친이 고용되어 있는 주의 법이 적용된다.

급여공제가 특별한 경우, 또한 그것이 타당하다면, 급여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고, 개시 주는 결정일로부터 20일 내에 비양육친이 고용되어 있는 주의 IV-D기관에 주사이의 급여공제의 이행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 고지가 타당하다면 공제되어야 할 총액, 양육비명령의 사본과 연체명세서를 포함하여 급여공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양(양육비)명령이 이루어진 주는 개시주에 의하여 정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급여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4) 45CFR Ch.Ⅲ(10-1-08 Edition) §303.100(a)(5).

25) Essentials for Attorneys in Child Support Enforcement(3rd Edition), the Federal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CSE), Oct, 2002, CHAPTER 10(<http://www.acf.hhs.gov/programs/cse/pubs/2002/reports/essentials/c10.html>).

4. 도입효과 및 운용실적

가. 효과

위와 같은 정기적인 양육비의 지급은 법정에서 더 번거로운 다른 이행강제수단을 진행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양육비지급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양육비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정 다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채무자측에 있어서도 급여공제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공제되므로 양육비채무자에게 연체가 많이 쌓이지 않고, 채무자가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그 급여에서 공제하므로 양육비로 지급될 금전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며, 채무자보다 사용자가 양육비지급을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편리한 점이 있다.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재혼한 경우 주로 재혼한 처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급여공제를 하게 되면 양육비를 둘러싼 재혼가정의 분열이 줄어들며, 모욕, 압류통지, 기타 다른 분열적인 징수조치를 피할 수 있다.²⁶⁾

나. 운용실적

제도시행 초기 급여공제제도의 효과가 아직 충분하게 분석되어 있지 않은 때 위스콘신주의 조사에서는 제도의 도입에 의해 양육비지급액이 11%에서 30%로 증가되었다. 이 후 양육비시스템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라 양육비징수 건수도 징수액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건수는 1980년의 약 75만건에서 2009년의 약 894만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징수총액도 매년 증가하여 2009년은 약 264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양육비의 징수방법으로서 급여공제제도의 이용이 보편적이며, 2009년의 징수액의 67.4%는 급여공제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 연방세·주세의 환급금이나 실업수당과의 상계를 합치면, 징수액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정부에 의한 자동적 징수수단의 정비가 징수액의 증대에도 공헌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징수가 곤란한 사례도 많이 있으며, 양육비제도에 의한 징수율(양육비명령이 있는 사례 중 징수가 된 사례의 비율)은 약 70%이다.²⁷⁾ 미국과 같이 강제징수나 간접강제의 수단이 강화되어 있어도, 30%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현실은 양육비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의 곤란을 보여주고 있다.

26) Th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p. cit. 3p.

27) 양육비이행강제국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임(http://www.acf.hhs.gov/programs/cse/pubs/2008/annual_report/ 최종방문일 2010. 12. 29).

다. 급여공제제도의 과제

급여공제제도의 최대의 문제점은 그 적용이 급여소득자에게 한정되며, 자영업자나 수입이 불규칙한 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자영업자 등의 경우, 소득세환급금의 상계가 이용되고 있지만, 환급금이 없으면 이 방법도 취할 수 없다. 자영업자 등은 그 실질적인 소득의 파악이나 자산의 처리가 곤란하며, 지급단계만이 아니라 양육비의 산정단계에서도 급여소득자와의 불공평이 예상된다. 급여자간에 불공평이 생기는 것은 전체의 의무의 이행을 저해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자가 아닌 부모부터의 양육비지급을 확보하는 제도의 검토가 큰 과제이다. 또한 자동급여공제에서는 부가 양육비의 지급에 무감각하게 되며, 모도 이를 정부로부터의 급부로 생각하게 되기 쉬우며, 당사자의 주체적인 부양의식이 희박해진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부(父)의 적극적인 부양참가를 저해하고, 자녀와 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검토

1. 입법 과정

양육비확보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제출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이며,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재경의원 대표발의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특별법의 형태로 발의되었다.²⁸⁾ 이 법안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나 기타 소득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소득공제, 제9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및 제공된 담보물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11조). 또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15세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이 후 정부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²⁹⁾, 앞의 김재경의원의 소득공제제도를 「직접지급제도」란 명칭으로 규정하고(제63조의2),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2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5년 9월 1일 제출(의안번호 : 172547)].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참조(<http://links.assembly.go.kr/bill/jsp/main.jsp>), 이하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동일함.

2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6년 11월 7일 제출(의안번호 : 175284)].

규정하고 있다(제63조의3). 또한 협의이혼 시 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하는 양육비협약서에 집행권원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제63조의4).

양육비에 관한 이들 법령은 국회심의 중 2008년 5월에 17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모두 폐기되었으며, 18대 국회에 들어 새롭게 법안이 제출되었다. 먼저 김동성의원 대표발의의 가사소송법개정안³⁰⁾은 부모의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가 정기금 형태인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자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뒤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가사소송법개정안³¹⁾은 2006년도 정부 발의의 가사소송법개정안 중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으며, 다만 양육비협약서에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두 의원발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 이 두 법안을 수정, 보완하여 하나로 통합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제출되었으며³²⁾, 이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5월 8일 공포되고, 민법의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가사소송법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대안은 우윤근의원 대표발의안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³³⁾

2. 주요내용

2009년의 개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외에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보완되었으며, 아래에서 그 취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8년 7월 29일 제출(의안번호 : 1800465)].

31) 2008년 11월 21일 제출(의안번호 : 1802151).

3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09년 4월 16일 제출(의안번호 : 1804599)].

33) 이 외에도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양육비채권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된 바 있으며(앞의 각주2)의 자료 중 김상용,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4.6.29, 31~41면), 이 번 가사소송법 개정 시에 함께 심의되지 않았으나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양육비 대지급법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2009. 6. 26. 제출, 의안번호 : 1805300)이 제출된 바 있다.

가.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혼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 시 당사자 간에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나, 그 협의만으로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³⁴⁾ 이에 개정 법률은 민법에 규정을 두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협의이혼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양육비부담협의서를 확인한 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효력에 대해서는 심판의 집행력에 관한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함으로써 강제집행 절차를 훨씬 간명하게 하였다.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다.³⁵⁾

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이혼소송에 결합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은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없이 는 파악이 곤란하다. 그러나 종래의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절차가 지연되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에 신설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분할·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청구인의 신청³⁶⁾이나 직권으로 재산명시·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 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도 장래의 양육비채권이

34) 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56조가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5호에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안에 대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확인'을 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 부분의 집행권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 검토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8.11. 4~5면).

35) 개정 민법·가사소송법 연구반, 「개정 민법·가사소송법 해설」, 사법발전재단, 2010..

36) 한명숙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가사소송법 개정안[2005. 6. 30. 의안번호 : 172183]에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재산분할청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육비사건(가사비송 마류 제3호)을 심리하면서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심판을 할 경우 직권이나 양육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지급의무자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심판이나 조정 등에 의하여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집행권원 상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자의 신청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그 제재수단으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더불어 양육비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접지급명령이 아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 제도적 취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그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즉 양육비채권자는 양육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지만 매각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소액인 양육비채권의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양육비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정판결서, 조정조서, 심판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 근무처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수료, 인지도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이 있게 되며, 아울러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무처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미 채무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부모의 양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급여소득자인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채무자에게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양육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번거로운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나. 요건

(1) 정기적 양육비 지급 채권이 있을 것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금 형태의 '양육비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능한 '양육비채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문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육비' 및 양육비의무의 법적인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육비를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면, 미성년 자녀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가 부모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해 갖는 양육비채권을 근거로 직접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이를 폭넓게 인정하면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친족에 대해 갖는 부양청구권에 근거한 부양료채권에 대해서도 직접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상 '양육비'에 대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육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으로 이해하고 있다.³⁷⁾ 이러한 양육비의무의 근거에 관하여 민법 제913조의 친권규정에서 찾기도 하고, 민법 제974조의 부양규정에서 찾기도 한다.³⁸⁾ 사적 부양원리에 따라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있으며(제975조), 그 부양정도도 부양의무자와 동일한 생활수준까지를 요구하지 않으나,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이러한 부양과 성격을 달리하는 이른바 1차적 부양³⁹⁾으로서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가 자신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어느 규정에 근거하든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모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생각건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마련된 제도이며⁴⁰⁾, 일본의 개정 강제집행제도가 양육비를 비롯한 부양료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는 '양육비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양육비'는 부모로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육비채권이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는, 혼인 중에 있는 부부의 생활비용에 포함되어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양육비채권(가

37) 강현중, "미성숙 자녀의 양육과 부양", 『사법논집』 제12집, 법원행정처, 1981, 43면; 차선자, 전개논문, 115면.

3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복순, "子女養育費 確保制度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7~12면 참조.

39) 또는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라고도 한다.

40) 2009년 개정 가사소송법의 개정 이유 참조.

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가사비송사건 제1호)과 부부의 이혼(혼인 취소나 혼인 외의 자녀의 인지 포함)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양육비채권(동류(同類)사건 제3호), 부양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동류사건 제8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육비채권은 보통 매월 일정한 금액의 정기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양육비채무자의 재정상태의 악화 등 장래의 양육비 이행이 불확실한 때에는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이므로 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매월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양육비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

연속하여 2회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1회의 불이행이 있을 후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계속하다가 또다시 1회 이상의 양육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양육비채권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양육비채권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소명으로 족하다고 한다. 양육비채무자로서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사실을 증명하여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3) 집행권원이 있을 것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집행권원은 집행문과 더불어 강제집행의 일반요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에 흠어져 규정되어 있으며,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판결·지급명령·집행중서·화해권고결정·제소전 화해조서 등이다.⁴²⁾

양육비에 관한 사건은 마류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실제 집행권원의 대부분은 이에 관한 심판(제41조)이나 조정조서(제59조 제2항)가 될 것이다. 또한 2009년 개정 민법에서 신설된 양육비부담조서도 앞으로는 중요한 집행권원으로서 활용될 것으로

41) 김상수, "양육비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직접지급명령제도", 「법조」, 636호, 법조협회, 2009. 21면.

42)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7, 102면.

생각한다.

(4)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

양육비채권자는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이 될 것이나, 자녀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부모를 상대로 부양청구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본인이 양육비채권자가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가사소송이나 비송사건의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⁴³⁾ 보통의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⁴⁴⁾

지급명령의 상대방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며, 지급명령 결정문 등본이 양육비지급의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사용자가 되며, 그는 양육비채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지급명령은 번거로운 절차에 불과하고, 양육비채무자의 부탁으로 지급명령의 이행을 게을리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해치게 되므로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다. 효과

양육비채권자가 급여소득자인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몇 년 앞서서 기한미도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규정을 두었으나⁴⁵⁾, 이것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을 규정한 것뿐이며, 개시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⁴⁶⁾ 별도의 추심이나 배당절차 등을 거쳐야 함에 비추어 직접지급명령제도가 한층 강화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라고 할 수 있다.

43) 미성년자 단독으로는 가사소송이나 비송사건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박동섭, “새 가사소송법과 미성년자의 가사소송능력”, 『사법행정』 368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5~9면 참조.

44) 한편,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

45) 일본 민사집행법 제151조의2 제2항.

46) 谷口園惠·筒井健夫·野村雅之·松井信憲·一場康宏, “擔保物權及び民事執行制度の改善のための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説(6)”, 『NBL』 774号, 2003. 38面.

또한, 한번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양육비지급의무자가 퇴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채권자는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집행의 원칙 상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는 양육비채권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서 급여는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급여채권」(제246조 제1항 제4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⁷⁾ 즉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급여(채권)'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⁴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그것이 정신적, 육체적인 것이든 또 독립적, 종속적인 것이든 상관없고, 나아가 그것이 공법상 혹은 사법상의 근로관계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이미 제공된 노동에 관한 것인지 기대수입인지 여부도 차이가 없으며, 그 급여가 정기적 급부이든 비정기적 급부이든 마찬가지이다.⁴⁹⁾ 따라서 급여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산방법,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노무계약에 의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부양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⁵⁰⁾

다만 급여자가 실제 지급받는 것은 그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기타 사회보장분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 중 압류금지 범위⁵¹⁾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급여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양육비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무방할 것이다.

47) 이와는 달리 급여채권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급여채권"으로 한정하고,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각종 수당은 포함되나,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은 '정기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개정 민법·가사소송법 연구반, 전개서, 52면).

48)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가족수당(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이나 상여금(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휴가비(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은 일반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며, 축의금·조의금·위로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49) 김경욱,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문제점", 「민사소송」, 제2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9, 531면.

50) 김상원 외 편, 「주석 민사집행법(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554~555면.

51) 급여채권의 1/2.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때는 급여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불가능하므로(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V. 남아있는 문제점(결론에 갈음하여)

1.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결정에 관한 그동안의 실무관행을 보면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에 의하기보다 기존의 관행에 따라 일률적으로 행하여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부부 각각의 재산 상황, 직업 및 연령, 생활정도, 자녀의 연령, 심리당시 통상교육비, 양육비 수준,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과 지출내역, 물가상승지수,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 양육자와 양육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나⁵²⁾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고려사항의 중요도와 그 배정비율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에서 양육비를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⁵³⁾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판결에서는 자녀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정한 사례가 56.1%, 월 40만원이 13.16%, 월 50만원과 25만원이 8.77%를 나타냈으며, 2006년 조사에서도 월 30만원이 38.19%로 가장 높고, 이어 월 50만원이 35.17%, 월 40만원이 16.58%로 나타났다.⁵⁴⁾

선진국가의 경우 앞에서 본 양육비의 이행강제제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이다. 즉 미국의 경우도 실제로 양육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표시된 양육비명령이 필요하나, 당초 양육비는 각 사례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양육비가 낮게 책정되는가 하면, 그 결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양육비 개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⁵⁵⁾ 따

52) 대법원 1986.6.10. 선고 86므46 판결; 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5.1.13. 자 2004브59(본심판), 2004브60(반심판) 결정; 서울가법 1992.5.7. 선고 91드38420 제2부판결.

53)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부모 사이에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에 필요한 수요, 양육비지급무자의 생활수준 및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안 제6조).

54)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114건과,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199건을 바탕으로 한 통계이다(이은정, “자녀양육비 지급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006년 9월 정기학술회의 발표문 9-10면(차선자, 전개논문, 121~122면에서 재인용)).

55) Williams, R.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Child Support Orders: Advisory Panel Recommendations and Final Report,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각 주는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산정방식)을 개발·사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소득할당모델(Income Share model), 소득비율모델(Percentage of Income model), 멜슨공식모델(Melson Formula model) 3가지의 기본적인 양육비계산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⁵⁶⁾ 먼저 소득할당모델은 37개의 주가 채용하고 있으며, 자녀가 부모와 한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자녀에게 돌아갈 몫을 부모의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한다.⁵⁷⁾ 다음으로 소득비율모델은 13개의 주가 채용하고 있으며 공동양육일 경우에는 부와 모의 소득이 고려되고,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비양육친의 소득만을 고려하여 자녀수에 따른 일정비율⁵⁸⁾을 곱하여 양육비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Melson공식모델은 수입할당모델을 보다 심화시킨 것으로서 부·모 각자의 순소득에서 자신들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최소한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그래도 남아 있는 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생활비 조정기준(Standard of Living Adjustment)을 곱한 만큼을 양육비에 포함시킨다.

영국의 경우도 부모의 소득과 자녀양육비용 등을 기본 요소로 하여 양육비기관이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⁵⁹⁾

독일의 경우⁶⁰⁾는 뒤셀도르프 산정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산정표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가족위원회에 의하여 출간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독일에서 자녀 양육비의 가액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승인된 것이다. 뒤셀도르프 산정표는 부양의무있는 부모의 순소득을 13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연령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정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2명

56) 미국의 양육비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손승은,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실무연구」 제10호,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2005, 515~525면;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 4 - 각국의 이혼제도-」 2008, 294~304면 참조.

57) 구체적으로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를 산출한 다음 그 양육비를 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모 각자의 소득비율을 곱하여 각자의 양육비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58)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의 경우 자녀가 한 명인 경우는 17%, 두 명인 경우는 25%, 세 명인 경우는 29%, 네 명인 경우는 31%, 다섯 명인 경우는 34%이고, 일리노이주의 경우 자녀가 한 명인 경우는 20%, 자녀가 두 명인 경우는 28%, 자녀가 세 명인 경우는 32%, 자녀가 네 명인 경우는 40% 다섯 명인 경우는 45%이다.

59) 법원행정처, 전게서, 397-399면.

60) 차선자, "독일의 양육비 산정 및 집행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19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 272~273면; 법원행정처, 전게서, 473~481면 참조.

의 자녀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월 표준 양육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권리자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 의무자의 소득 단계를 한 단계 상향 조절하거나 하향 조절하여 양육비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자체 연구모임을 통하여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⁶¹⁾ 이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300만~399만원 정도이고 자녀의 나이가 6-11살인 경우 기본 양육비는 월 785,000원으로 정해지며, 부모가 적정 비율로 분담하고 자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476,000원이 추가 산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자녀양육에 관한 실태조사⁶²⁾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실경비를 바탕으로 각 사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외국의 예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양육채권자나 채무자 쌍방이 양육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당사자가 양육비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양육비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2. 양육비채권의 차별화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하여도 사실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육비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양육비채권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양육비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법정담보권을 인정하여 비양육친의 담보권설정 청구에 의해 담보권설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기한 담보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견해⁶³⁾가 있는가 하면, 양육비채권도 기본적으로 일반 채권이므로 물권에 가까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61) 인터넷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2008년 1월 8일자 기사.

62)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서 취학 전까지 6년 동안은 49,570,000원이 들고, 초등학교는 56,520,000원, 중고등학생기는 67,240,000원, 대학생기는 58,650,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또한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865,000원이며,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85,000원(99만원이하 저소득가구는 자녀 1인당 541,000원, 500만원이상 고소득가구 1,505,000원)으로 소득대비 자녀양육비 비율 46.4%, 가구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 비율이 56%에 이르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6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63) 손승은, 전계논문, 558면.

다는 견해도 있다.⁶⁴⁾

양육비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가장행위 등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양육비채권에 우선채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회의 명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정기금인 양육비채권이 이행되므로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급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그리고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채권보다 우선적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비가 비교적 소액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크게 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의 규정도 양육비제도의 실효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즉 급여채권에 관하여는 청구채권의 종류나 채권자·채무자의 구체적 생활상황 등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여의 1/2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며, 급여의 1/2이 최저생계비 12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2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압류금지 규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예를 들어 2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9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이를 급여에서 압류하고자 해도, 부(父)의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그 달의 급여에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8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래 압류금지부분은 채무자 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의 생활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인 양육비는 압류금지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와 관련하여, 부모 일방에 대한 자녀의 부양청구권의 경우는 위의 압류금지 규정에 따른 제한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우선시하고 있다.⁶⁵⁾ 또한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2003년의 민사집행법의 개정(제152조 제3항)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양육비 등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급료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그 지급기에 받아야 할 급여의 3/4에 상당하는 부분에서 1/2로 축소함으로써, 종래에는 원

64) 김상수, 전계논문, 8면.

65) 독일 민사소송법(ZPO §850d(1)). 다만, 채무자 본인의 생계유지나, 압류채권자보다 우선 순위인 부양청구권자의 법률상의 부양청구권의 이행 및 채권자와 동순위인 부양청구권자에 대한 균등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은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칙적으로 매월 급여의 1/4 상당액 밖에 압류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1/2까지 압류할 수 있게 되었다.⁶⁶⁾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그 성과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⁶⁷⁾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신설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양육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밖의 개정 사항도 효율적인 양육비 징수에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직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더불어 위의 부분도 향후 개정 시에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상용,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 제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4.
- 박동섭, 「주석 가사소송법」, 박영사, 2004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7
- 한국여성개발원,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2006
- 개정 민법·가사소송법 연구반, 「개정 민법·가사소송법 해설」, 사법발전재단, 2010.
- 김연, “가사소송상 효율적인 이행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0권 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 신증철, “가사사건에 관한 집행과 이행의 확보 및 벌칙”, 「사법행정」 제430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 김유미,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법학」 제2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66) 이로 인해 일반채권의 경우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압류금액이나 배당금액의 산출이 복잡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小川理佳·吉川紀代子, “養育費等の履行確保のための新しい強制執行制度について-東京地方裁判所民事執行センターにおける運用現況-”, 「家庭裁判月報」 57卷 9號,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05, 18面).

67) 새로운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신청 현황('09.11~'10.12, 건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345	83	6

소 1999.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9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

강현중, “미성숙 자녀의 양육과 부양”, 「사법논집」 제12집, 법원행정처, 1981

김상수, “양육비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직접지급명령제도”, 「법조」, 법조협회, 2009.

박동섭, “새가사소송법과 미성년자의 가사소송능력”,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차선자, “적정양육비 산정 기준을 위한 제안”, 「가족법연구」 제20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6.

차선자, “독일의 양육비 산정 및 집행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19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

손승은,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실무연구」 10호, 서울가정법원 법과가사재판실무연구회, 2005.

[외국문헌]

小川理佳·吉川紀代子, “養育費等の履行確保のための新しい強制執行制度について-東京地方裁判所民事執行センターにおける運用現況-”, 「家庭裁判月報」 57卷 9號,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05

谷口圓惠·筒井健夫·野村雅之·松井信憲·一場康宏, “擔保物權及び民事執行制度の改善のための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説(6)”, 「NBL」, 商社法務 774号, 2003.

Th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Rockville, Maryland), “Mandatory Income Withholding Implementation Monograph”, 1985.

Vicki Turetsky, “Child Support Administrative Processes:A Summary of Requirements in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1997.

Corbett,T., I. Garfinkel and N.C.Schaeffer, “Public Opinion about a Child Support Assurance System”, *Social Service Review*, Vol. 62, 1988.

[인터넷자료]

미국 아동가정청(AC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홈페이지 자료
(<http://www.acf.hhs.gov/index.html>)

대법원 사법연감(<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미국법령정보검색사이트(<http://www.law.cornell.edu/uscode/>)

독일법령정보검색사이트(<http://bundesrecht.juris.de/zpo/>)

[Abstract]

Modified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Specialized in Income Withholding

Jeon, Hye-Jung

Ph.D., Officer of the Legal Research, Ministry of Justice

This paper examines issues surrounding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Recently in Koera, increase of a divorce rate and single-parent families have taken a growing interest in introduction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In 2008, Family Litigation Act is amended, including establishment of Income Withholding Oder,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is improved. Income Withholding is the most efficient and available system in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Income Withholding Oder is that the wages of a non-custody parent must be subject to withholding on the effective date of the oder issued in the family court.

In case a debtor(non-custodial parent) has failed to pay child support by up to two installments thereof, obligee(custodial parents) can apply for oder of Income Withholding. Notice of Income Withholding from family court are sent to the employee, the employer deducts the specified amount of child support each pay period and sends it to the custodial parent.

From now, I expect that Income Withholding Oder gives the child a more stable supply of child support. In addition, child support should tale priority over the other obligation, and there is need for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standard of child support.

Key Words :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child support, support, income withholding, civil execution